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정관

제정 2010. 11. 29

1차 개정 2011. 12. 01

2차 개정 2013. 12. 18

3차 개정 2015. 07. 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수의학교육과 수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의학 및 관련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개발, 평가를 수행하고, 수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수의·축산 분야의 발전 및 국민복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약칭 인증원) 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Accreditation Board for Veterinary Education in Korea (약칭 ABOVEK)이라고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인증원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인증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의학교육전반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한 수의학전교육, 수의학기본교육, 졸업 후 수의학교육, 평생교육 등)의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의사국가시험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의사 면허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의학교육 및 수의학교육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
5. 수의학교육 관련 연구 지원 사업

6. 수의료 정책과 제도의 연구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업
 7. 수의학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8. 기타 인증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제 1항의 각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인증원의 회원은 인증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대학, 개인, 정부부처 및 산업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인증원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으며, 인증원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및 인증원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입회와 탈퇴) 인증원 회원의 입회 또는 탈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인증원의 회원으로서 인증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의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① 인증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이하 ‘원장’) 1인
3. 이사 20인 이내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수의 임원을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대한수의사회 회장
2.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회장
3. 대한수의학회 이사장
4.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5.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와 이사회에서 정하는 공익대표 각 1인
7. 한국임상수의학회 회장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출직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수) 인증원의 원활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근직 이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인증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법원등기 이사는 이사장, 원장, 선출직 이사 중 1명으로 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인증원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인증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

3. 위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와 의결 제출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4조(원장의 선임과 직무) ①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얻어 위촉한다.

② 원장은 인증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궐위 기간에는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정지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개최된 인증원의 해당 회의에 절반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인증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증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 ① 인증원 최고의 의결 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된다.

- ③ 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요구로 소집한다.
- ④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총회는 정관의 제·개정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 ⑥ 총회에서는 감사를 선출한다.
- ⑦ 회원은 위임장으로써 출석과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 제18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인증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및 탈퇴 승인
6.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증원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상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위임장으로써 출석과 의결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은 재적이사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의결제척 사유)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제23조(서면결의) 제19조 제7호의 사항 가운데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 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서면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 인증원의 사무실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인증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정관 부칙에 별표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① 인증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기금의 관리) ① 인증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 재원) 인증원의 운영재원은 회비, 사업 수익, 국고보조금, 관련단체 및 후원단체의 보조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8조의1(모금 관련 정보공개)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인증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되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한다. 다만 수의학교육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다음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0조(회계연도) 인증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 7 장 조 직

제32조(실행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인증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반드시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대한수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33조(실행위원회의 기능) 실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1.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위원회) ① 원장은 인증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② 실행위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이나 소관 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사무국) ① 원장은 인증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인증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신고) 인증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인증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9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민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중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항은 민법 및 규칙을 적용한다.

제40조(규정 제정) 인증원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실행위
원회에서 따로 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